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	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촉진(2.4대책)을 위하여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의 구조·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보강방안을 전제로 복도 유효너비 기준을 완화('21.10.15)하였으나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도별 화재 위험도,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 변경 대상을 축소하고 일몰기한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복도의 유효너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의 축소
(제15조의2제4항)

복도 폭 기준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준주택을 건축물 사용 특성상 화재 위험도가 낮은 기숙사로 축소하여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령안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조의 준주택으로”를 “제4조제1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용도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복도의 유효너비 완화의 유효기간) 제15조의2제4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의2(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) ① ~ ③ (생략)	제15조의2(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19조에 따라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「주택법 시행령」 <u>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</u>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앙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.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4조제1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용도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988